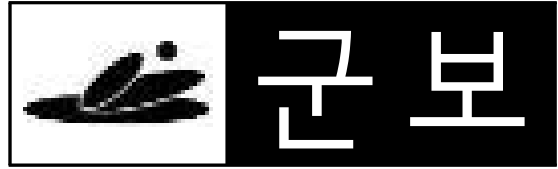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41호 2019. 6. 20.(목)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467호 :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예산군 규칙 제1468호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8
- 예산군 규칙 제1469호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1

회 람									
--------	--	--	--	--	--	--	--	--	--

제9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6월 20일

예산군 규칙 제1467호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

가.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 중 “금품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
4.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방지과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1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1조제3항제2호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100분의 50을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10만원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2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

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8조 관련)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강등	강등· 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5. 징 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 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 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사항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 ,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 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 · 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 고 취 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7. <u>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u></p> <p>가. <u>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나. <u>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다. <u>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8.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 ⑦ (생략)

<신설>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삭제>

<삭제>

<삭제>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신 설>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 · 행사 · 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 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

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자신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 ①·② (생략)
<신설>

알릴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제30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
무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
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내용 중 반영이 필요한 사항 정비
 -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행동강령책임관 상담항목, 행동강령 교육내용 추가, 전체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사항 추가(안 제5조)
 - 직무관련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
- 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갑질 개념 규정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공무원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등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을 신설하고 처리 서식 마련
- 라.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에 신설된 항목 추가(안 제26조)
 -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는 행위유형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반영
- 마.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0조)
 -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8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6월 20일

예산군 규칙 제146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가격평정)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 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인</u> 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p>	<p>제17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u>감정평가업자</u>----- ----- ----- ----- -----.</p>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안 제17조제2항)
 -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 계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대상 확대

제9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6월 20일

예산군 규칙 제1469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삽교읍	이리		후사리
	상성1리		지석리
	성2리		증곡리
	신가2리	둔2리	
	용동3리	대동리	
	상하2리	낙상1리	
	두5리	낙상2리	
	안치리	고도리	
신가4리	시동리		
대술면	시산1리	옥전리	
	마전1리 삼바실	구암리	
	시산2리 사쟁이	화전1리	
신양면	무봉리	화전2리(고상골)	
	황계리	용안리(안용안)	
	서계양1리	마교리(진골)	
	차동리 불문리	고덕면	사1리
	여래미리 고재고랑		사2리
	하천리 산막		용3리
광시면	구례리		지곡리
	용두리	구만3리	
	운산1리	탄중리	
대흥면	지곡리	신암면	오산2리
	송지대야리		조곡1리
	탄방리		용궁2리
	교촌1리	오가면	신석1리
	교촌2리		신원1리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부)	출발지	도착지	기준 요금(원)	본인 부담	군 지원액	오지 보상
계	54개 마을	216회		413,700	92,200	290,700	30,80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000	1,300	3,700	
삽교읍	이 리	외뜸말	삽교정류소	7,000	1,300	5,700	
	상성1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5,000	1,300	3,700	
	성2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6,000	1,300	4,700	
	신가2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2,800	1,300	1,500	
	용동3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4,000	1,300	2,7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500	1,300	3,200	
	두5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4,000	1,300	2,700	
	안치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7,200	1,300	5,900	
	신가4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6,500	1,300	5,200	
대술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5,700	1,700	4,000	
	마전1리 삼바실	삼바실	쌍송배기	12,400	3,700	8,700	
	시산2리 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000	1,800	4,200	
산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300	5,7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7,100	1,300	5,8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5,900	1,300	4,6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9,000	1,300	7,7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8,000	1,300	6,7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7,100	1,300	5,800	
광시면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000	1,300	4,7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4,100	1,300	2,800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5,300	1,300	4,000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8,800	2,600	6,2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2,600	3,700	8,9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1,900	3,500	8,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5,300	4,600	10,700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5,300	4,600	10,700	
응봉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6,800	1,300	2,700	2,800
	후사리	안뫼절	예산역	9,000	2,700	6,300	
	지석리	월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7,200	1,300	3,100	2,800
	증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000	1,300	1,9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8,000	1,300	6,7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2,100	1,300	10,8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4,000	1,300	12,700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800	1,300	12,500	
봉산면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800	1,300	4,7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8,800	1,300	4,7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500	1,300	5,4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300	1,300	3,200	2,8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900	1,300	3,800	2,800
	화전2리(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5,400	1,300	1,300	2,800
	옹안리(안옹안)	안옹안	고덕정류소	8,300	1,300	4,200	2,800
	마교리(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7,000	1,300	2,9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000	1,300	6,7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6,200	1,300	4,900	
산암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000	2,100	4,9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8,100	2,400	5,7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500	2,800	6,700	
	용궁2리	마을회관	신례원정류소	9,000	2,700	6,3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300	5,7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4,500	1,300	3,2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3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읍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2조(운행대상 마을) 「 <u>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운행대상 마을) 「 <u>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 」-----				
	[별표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별표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예산읍	향천리	
	이리		후사리		응봉면	노화2리
삽교읍	상성1리	지석리	삽교읍	이리		후사리
	성2리	증곡리	삽교읍	상성1리	지석리	
	신가2리	둔2리		성2리	증곡리	
	용동3리	대동리		신가2리	둔2리	
	상하2리	<신 설>		용동3리	대동리	
	두5리	<신 설>		상하2리	낙상1리	
	<신 설>	고도리		두5리	낙상2리	
<신 설>	시동리	안치리		고도리		
대솔면	시산1리	옥전리	대솔면	시산1리	옥전리	
	마전1리 삼바실	구암리	대솔면	마전1리 삼바실	구암리	
<신 설>	화전1리	시산2리 사쟁이		화전1리		
신양면	무봉리	<신 설>	신양면	무봉리	화전2리(교상골)	
	황계리	<신 설>		황계리	운안리(안운안)	
	서계양1리	<신 설>		신양면	서계양1리	마교리(진골)
	차동리 불문리	사1리			차동리 불문리	사1리
	여래미리 고재고랑	사2리			여래미리 고재고랑	사2리
	하천리 산막	용3리			하천리 산막	용3리
광시면	구례리	지곡리	광시면	구례리	구만3리	
	용두리	구만3리		구례리	탄중리	
	운산1리	탄중리		용두리	오산2리	
대흥면	지곡리	오산2리	대흥면	운산1리	조곡1리	
	송지대야리	조곡1리		지곡리	용궁2리	
	탄방리	용궁2리		송지대야리	오가면	신석1리
	<신 설>	신석1리		탄방리		신원1리
	<신 설>	<신 설>		교촌1리		
				교촌2리		

[별표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읍면	마을명 (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 요금	본인 부담	군 지원액	오지 보상
	<신 설>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000	1,300	3,700	
	이 리	외뜸말	삼교정류소	7,000	1,300	5,700	
	상성1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5,000	1,300	3,700	
	성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000	1,300	4,700	
	신가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2,800	1,300	1,500	
	용동3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000	1,300	2,7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500	1,300	3,200	
	두5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000	1,300	2,700	
	<신 설>						
	<신 설>						
대음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5,700	1,700	4,000	
	마전1리	삼바실	쌍송배기	12,400	3,700	8,700	
	<신 설>						
산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300	5,7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7,100	1,300	5,8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5,900	1,300	4,6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9,000	1,300	7,7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8,000	1,300	6,7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7,100	1,300	5,800	
광사면	구례리	마을회관	광사정류소	6,000	1,300	4,7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사정류소	4,100	1,300	2,800	
대항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사정류소	5,300	1,300	4,000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8,800	2,600	6,200	
대항면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2,600	3,700	8,9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1,900	3,500	8,400	
	<신 설>						
	<신 설>						
용방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용방정류소	6,800	1,300	2,700	2,800
	후사리	안릿절	예산역	9,000	2,700	6,3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용방정류소	7,200	1,300	3,100	2,800
	증곡리	마을회관	용방정류소	6,000	1,300	1,9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8,000	1,300	6,7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2,100	1,300	10,800	
	<신 설>						
	<신 설>						
봉산면	고노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800	1,300	4,7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8,800	1,300	4,7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500	1,300	5,4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300	1,300	3,200	2,8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900	1,300	3,800	2,800
		<신 설>					
	<신 설>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000	1,300	6,7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6,200	1,300	4,900	
산양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000	2,100	4,9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8,100	2,400	5,7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500	2,800	6,700	
오가면	용궁2리	마을회관	산태원정류소	9,000	2,700	6,300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300	5,700	
	<신 설>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3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읍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30%(십원단위 절사)를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별표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읍면	마을명 (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 요금	본인 부담	군 지원액	오지 보상
계	54개 마을	216회		413,700	92,200	280,700	30,800
				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000	1,300	3,700	
	이 리	외뜸말	삼교정류소	7,000	1,300	5,700	
	상성1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5,000	1,300	3,700	
	성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000	1,300	4,700	
	신가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2,800	1,300	1,500	
	용동3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000	1,300	2,7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500	1,300	3,200	
	두5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000	1,300	2,700	
	안치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200	1,300	5,900	
	신가4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500	1,300	5,200	
대음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5,700	1,700	4,000	
	마전1리	삼바실	쌍송배기	12,400	3,700	8,700	
	시산2리	사쟁이	쌍송배기	6,000	1,800	4,200	
산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300	5,7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7,100	1,300	5,8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5,900	1,300	4,6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9,000	1,300	7,7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8,000	1,300	6,7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7,100	1,300	5,800	
광사면	구례리	마을회관	광사정류소	6,000	1,300	4,7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사정류소	4,100	1,300	2,800	
대항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사정류소	5,300	1,300	4,000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8,800	2,600	6,200	
대항면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2,600	3,700	8,9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1,900	3,500	8,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5,300	4,600	10,700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5,300	4,600	10,700	
용방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용방정류소	6,800	1,300	2,700	2,800
	후사리	안릿절	예산역	9,000	2,700	6,3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용방정류소	7,200	1,300	3,100	2,800
	증곡리	마을회관	용방정류소	6,000	1,300	1,9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8,000	1,300	6,7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2,100	1,300	10,8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4,000	1,300	12,700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800	1,300	12,500	
봉산면	고노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800	1,300	4,7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8,800	1,300	4,7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500	1,300	5,4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300	1,300	3,200	2,8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900	1,300	3,800	2,800
		화전2리(고삼골)	고삼골	고덕정류소	5,400	1,300	1,300
	안용리(안용안)	안용안	고덕정류소	8,300	1,300	4,200	2,800
	마교리(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7,000	1,300	2,9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000	1,300	6,7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000	1,300	3,7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6,200	1,300	4,900	
산양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000	2,100	4,9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8,100	2,400	5,7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500	2,800	6,700	
오가면	용궁2리	마을회관	산태원정류소	9,000	2,700	6,300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300	5,7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4,500	1,300	3,2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3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읍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사)를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1. 제안이유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개편과 연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섬김택시 운영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조례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근거가 되는 조례명을 명확히 기재(안 제1조, 제2조)
- 나. 대상마을의 확대(안 별표 1)
- 다. 대상마을의 운행구간 및 지원 금액 수정(안 별표 2)